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123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영

피고주식회사 B

변론 종결2023. 4. 18.

판결 선고2023. 5. 9.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5. 4.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D에 1항 기재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가공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판 판매업, 철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지붕판금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C에 철물 등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수령을 위해 각 어음(어음금 합계 1,617,475,684원)을 받았는데 위 각 어음은 2020. 5. 4. 지급 거절로 부도처리 되었다.

다. 한편 피고와 C는 2020. 5. 4.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서는 2020. 5. 7.경 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신청으로 2021. 12. 16. C는 원고에게 1,617,475,6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 2021차전1690)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2. 1. 2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7, 16~18,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합계약 16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참조).

2)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여부 갑 제6, 7, 9~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2020. 5. 4.경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C는 2020년 초경부터 지속적인 영업 손실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C가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전자어음이 2020. 5. 4.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나기에 이르렀으며, 그 무렵부터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였다.

② C가 2020. 5. 4.경 보유한 자산으로는 기계설비와 제조물 등의 유체동산과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들이 있었는데, 기계설비 등의 경우 그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서 가치가 있는 주요 자산으로는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들이 유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에 C는 2020. 5. 4.경 심각한 재정위기 속에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들을 일괄적으로 양도하기에 이르렀으나, 위 양도된 물품대금 채권들이 채권양수인인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채권자들도 위 물품대금 채권들에 대하여 경합적으로 가압류 집행을 하였는바, 2020. 5. 4. 발생한 부도가 단순히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 C는 위 부도 이후 자금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사업을 중단하였다.

3)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다수의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에게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관련 법리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C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어음부도가 발생하였으며, 심각한 자금난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자산인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들을 일괄 처분하기에 이르렀으나 그 처분된 물품대금 채권의 액수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는, C는 자산규모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회사이고 피고가 양도받은 채권액은 그에 비하여 미미하였다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선의항변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의 선의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이미 추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판사정왕현

별지